

정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4개국을 방문하기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각국의 地方議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접하기에는 무리였다고 생각되나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연수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고 느낀 것들의 정황활동에 접목시켜 議會運營의 內實化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議員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상원해 주신 여러 議員님들과 事務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海外研修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宗一 韓大運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유럽의 선진의회제도를 살펴보고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 議政活動에 적극 활용하여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마포구가 되도록 議員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議事日程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40만 마포구민의 福祉增進과 區政發展에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가지 議員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3일 제36회 臨時會 제1차 本會議에서 總務財務委員會 尹明奎委員長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本會議 議事日程에 區政質問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의장이 여러 議員님들과 協議하여 처리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후 執行機關의 관계공무원들이 尹委員長님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마포구의 일부 행사시 오해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尹委員長께 약속한 바 있어 본의장이 尹委員長님과 協議를 한 결과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으므로 區政質問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執行機關에서는 行政業務를 추진하실 때에는 좀더 철저히하고 公正하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區民에게 오해나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서울특별시 麻浦區議會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8分 散會)

○出席議員(32人)

李宗一	韓賢應	庾應鳳
金星煥	李應洹	李天揆
金順錦	裴相大	金英植
金鍾烈	沈載昶	朴映吉
鄭聖鈺	洪性煥	朴東七
俞南烈	韓大運	鄭晚植
朴相洙	金東暉	蔡在善
金世昌	金忠煥	金平田
李震杓	金孝喆	李仁求
庾東均	金裕顯	尹明奎
韓守均	權五範	

○出席公務員

區廳長	盧承煥
副區廳長	金賢鍾
保健所長	金永浩
總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文忠實
市民局長	尹丙汝
都市整備局長	李春基
建設局長	申東文
總務課長	文燁昇

(參照)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에대한 절차및방법

1. 후보자 소견청취

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앞서 후보자의 등록 순서에 따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로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한다.

나. 5분 경과시에는 의장이 소견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후보자 추천 절차

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경력·비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전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2회에 걸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나. 단기명 투표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1회에서 1인의 후보자를 먼저 결정한 후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다. 단, 1회에서 결정된 후보자가 비경력자 일 경우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 결정은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 중에서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3. 후보자 추천 방법

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추천자로 한다.

나. “가”항에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가”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 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추천자로 한다.

다. “나”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추천자로 한다.
- 2) 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자로 한다.
- 3)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2. 9.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2월 7일
유남렬의원의외 6인 제출

나. 회부일자: 1996년 2월 8일

다. 상정일자: 제3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6.2.9.)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유남렬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 14877호)의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여비규정(1995.12.29. 대통령령제14857호)의 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주요개정골자

○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地方議會 議員이 회기중 會議에 出席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제14877호)과 국내여비규정(1995.12.29. 대통령령제14857호)의 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 및 출장경비의 보전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의원이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 및 식비가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지급단가 인상 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어느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가?

○ 답변요지(유남렬 의원): 본 의원도 다소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나 지급단가의 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규정되어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